



대 전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3구합742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 처분취소
원 고 A
피 고 ○○광역시○구청장
변 론 종 결 2025. 5. 14.
판 결 선 고 2025. 5. 2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. 12. 16.자 등록면허세 135,000원, 2022. 1. 5.자 등록면허세 27,000원의 기술거래면허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[원고는 2024. 10. 4.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'2022. 3. 9.자 등록면허세 27,000원'으로 기재하고 있으나, 2022. 3. 9.자 등록면허세 독촉장 겸 영수증(갑 제7호증)은 원처분인 2022. 1. 5.자 등록면허세 27,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'독촉장 겸 영수증'이므로 이는 '2022. 1. 5.자 등



특면허세 27,000원'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]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04. 2. 27. 구 기술이전촉진법(2006. 12. 28. 법률 제81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, 법률 제8108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명칭이 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'로 변경됨) 제11조에 의한 기술거래사(면허번호 B)로 등록하였다(이하 위 기술거래사 등록으로 취득한 면허를 '이 사건 면허'라 한다).

나.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6. 12. 30.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어 2017. 1. 1. 시행된 것) 제39조 [별표 1] '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' <제4종>에 '193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'이 신설되었다.

다. 피고는 2021. 12. 16. 원고에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등록면허세 135,000원(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 후 가산금 4,050원 추가)을 부과하였고, 2022. 1. 5. 원고에게 2022년도 등록면허세 27,000원(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 후 가산금 810원 추가)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등록면허세 135,00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(2022년도 등록면허세 27,00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함), 2022. 6. 4.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23. 4. 20. 이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 내지 7호증, 갑 제3호증의 1, 을 제1 내지 7호증의



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1) 원고는 2004년도에 ○○○○거래소로부터 이 사건 면허를 받았는데, 이후 ○○
○○거래소가 폐업되면서 이 사건 면허도 자동으로 폐기되었다. 그런데도 원고가 이
사건 면허를 등록할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○○○○○○진흥원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
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(이하 '제1주장'이라 한다).

2) 원고는 상당 기간 실업 상태에 있으므로, 이 사건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
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'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
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', 그 위임에
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의 '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
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'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
(이하 '제2주장'이라 한다)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제1주장에 관한 판단

1)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2006. 12. 28. 법률 제8108호로 전
부개정된 것) 부칙 제2조 제4항은 "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
규정에 따라 ○○○○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○○
○○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."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에 따라 원고가 그
이전에 구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에 의해 ○○○○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구

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(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식경제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순차 변경됨)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보게 되었다. 따라서 원고가 2004년 ○○○○거래소에 등록한 이 사건 면허는 현재 ○○○○○○부장관에 등록한 면허로 존속하고 있다.

2) 한편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(2009. 1. 30.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된 것) 제38조는 ○○○○○○진흥원을 새로 설립하였고, 이에 따라 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2009. 1. 30.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된 것)은 종전의 '제9조(○○○○○거래소의 설립·운영)'를 삭제하고, 부칙 제8조 제2항은 "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'제9조의 규정에 따른 ○○○○거래소'를 '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○○○○○○진흥원'으로 하고, 제9조를 삭제하며, 제10조 제5항, 제22조 제2항, 제23조 제1항·제2항, 제29조 제1항 제1호, 제34조 제1항 전단, 제39조 및 제40조 중 '○○○○○거래소'를 각각 '○○○○○○○진흥원'으로 한다."고 규정하여 종래 ○○○○○○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거래사의 등록 업무를 수행하였던 ○○○○거래소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○○○○○○원이 수행하게 되었다.

3)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당초 원고가 ○○○○거래소에 기술거래사 등록을 한 이 사건 면허는 ○○○○○○부장관에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 ○○○○○○진흥원이 이를 관리하면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(을 제6,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실제로도 원고는 여전히 기술거래사로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).

라. 제2주장에 관한 판단

앞서 든 증거들,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



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의 등록면허세 부과세대 상인 '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',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5호의 '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'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, 원고가 실업 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1) 지방세법상의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(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867 판결 참조), 기술거래사 등록에 대하여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역시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.

2)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1]에 의하면 기술거래사의 등록은 면허세 부과대상(제4종)으로 분류되어 있다.

그리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'기술이전법'이라 한다)은 기술거래사의 경우 별도의 자격증 없이 기술이전·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와 같이 등록된 기술거래사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[별표 1]의 <제4종> '193. 기술이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'이라고만 규정하여 기술이전법에 따른 등록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업무 개시나 개업 등을 추가적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.



3) 기술거래사의 경우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[별표 1]의 <제4종> '113. 법무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'로, 변호사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[별표 1]의 <제4종> '114.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' 등으로 규정하여 그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으로 업무개시의 신고, 개업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, 이러한 경우 휴업 등의 경우를 상정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반면에 기술거래사의 경우 그 면허를 사용·수익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이나 개업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, 나아가 기술거래사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실업 상태이든지 그 면허를 사용·수익하는 데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. 결국 기술거래사로 등록하여 그 면허를 사용·수익하는 데 개업, 휴업 등의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, 등록만으로 언제든지 곧바로 면허를 사용·수익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사건 면허를 실제로 사용·수익하였는지 여부, 실업 상태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4) ○○○○○○○진흥원은 기술거래사가 그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'기술거래사 등록취소 신청서' 등을 제출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(피고가 2025. 2. 14. 제출한 참고자료 1, 2 각 참조), 기술거래사는 직접 등록취소 절차를 밟아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. 원고가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그 이후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5)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기 전부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2007. 12. 31.부터 2008. 5. 21.까지 사이에 실직 상태에 있었고 다시 2020. 1. 1.까지



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 또다시 실직 상태에 있는바,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각 등록면허세의 부과기간 내내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○○

판사 권○○

판사 이○○



별지

관계 법령

■ 지방세법

제23조(정의)

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면허”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·등록·지정·검사·검열·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,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(受理) 등 행정청의 행위(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납세의무자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2.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.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6조(비과세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·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4.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

제35조(신고납부 등)

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,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.

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39조(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)

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(제39조 관련)

<제4종>

- 113. 「법무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
- 114. 「변호사법」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
- 193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

제40조(비과세)

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.

- 5.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

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

제14조(기술거래사의 등록·육성 및 지원)

- ① 기술이전·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·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·자문·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·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
 - 3.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



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9조(업무의 위탁)

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,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 <법률 제8108호, 2006. 12. 28.>

제2조 (경과조치)

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「기술이전촉진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.

부 칙 <법률 제9369호, 2009. 1. 30.> (산업기술혁신 촉진법)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

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”를 “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"기술진흥원"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제9조를 삭제하며, 제10조 제5항, 제22조 제2항, 제23조 제1항·제2항, 제29조 제1항 제1호, 제34조 제1항 전단, 제39조 및 제40조 중 “한국기술거래소”를 각각 “기술진흥원”으로 한다.

■ 구 기술이전촉진법(2006. 12. 28. 법률 제81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조 (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·운영)

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전, 기술거래·기술평가의 촉진 및 촉진계획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제11조 (기술거래사의 등록·육성 및 지원)

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·자문·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거래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있는 자는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사에 대하여 기술거래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06-17

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끝.